

::::: 박람회 참가규정 :::::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 및 계약서 제출과 함께 참가비를 납부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18서울국제소비재전시회(상/하)"를 말한다.
3. '주관자'라 함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BEXCO 301-C호 소재하고 있는 **㈜티존코리아**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1. 전시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부스비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함으로써 본 박람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전시면적 배정

주관자는 참가신청 순에 따라 국적, 참가횟수,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사전허가 없이 직매 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4.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 칠, 접착제 등으로 훼손 또는 원상 변경을 할 수 없다.
5. 주관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참가비 납입 조건

1. 전시자는 총 부스비의 50%를 참가신청서 제출 후 1주일 이내에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행사개최 4주전에 잔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 마감기한 이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100% 완납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참가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가 참가비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미납할 경우, 주관자는 완납 시까지 참가를 유보하거나,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제6조】 전시자의 참가 취소 또는 변경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전시자의 사정에 의한 참가취소는 다음과 같이 참가취소 위약금이 발생한다.
전시회 개최 1개월전 까지 취소 : 총 참가비의 50%를 해약금으로 납부
전시회 개최 1개월전 이내에 취소 : 총 참가비의 100%를 해약금으로 납부
3.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참가업체 주차

1. 전시업체의 차량에 대한 주차권을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배정된 전시 면적 내의 장치, 전시품 반입 및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시킬 경우 주관자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주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2.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하는 배정면적 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가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및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시 전시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전시자가 책임진다.

【제12조】 방 화 규 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져야 하며,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보 충 규 칙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전시자는 주관자 및 전시장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분 쟁 해 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판결에 따라야 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을 최종으로 한다.